행정 및 공무원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새로운 조직등에 대해서

현재 공무원은 일본이 놓여져 있는 상황을 충분히 자각해 전체의 봉사자라는 인식으로 국민본위·주민본위의 행정에 주력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공무원의 부정을 경계하고, 규율을 바로 잡는 일에 대해서는, 일찍이 주목하여, 각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공무원의 부정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1996년 12월 19일에 개최된 사무차관등의 회의에서 정부가 실효있는 부정방지와 문제발생을 방지하는데에 適正한 행정집행체제를 확립함과 함께, 각 관청에서는 공무원윤리규정에 따라 행정 및 공무원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새로운 추진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귀하도 직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이 합의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최근 지방공공단체 일부에서는 출장비·접대비등의 잘못된 집행이 문제가 되어 국민사이에 지방공무원에 대한 불신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감마저도 금이 가게 하고 있다.그러므로 지방공공단체는 공무원윤리 확립과 올바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히 명심한다.

都道府縣내의 市町村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이 합의를 충분히 알려 철저하게 시행되도록 아울러 부탁드린다.

< 別紙 >

행정 및 공무원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새로운 추진에 대하여

< 1996년 12월 19일 사무차관등 회의 합의사항>

오늘날 일본은 각분야에서 냉정한 선택을 수반하는 개혁을 해야만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아 개혁의 시련을 극복해 보다 좋은 21세기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일이 불가결하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일부공무원의 부정이 계속되어 행정 및 공무원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며,그 현실을 직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런 사태를 가슴 아파하면서도 강한

사명감과 열의로 직무에 매진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결의를 다진다.

부정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이 국민전체의 봉사자임을 새롭게 자각하며, 조직전체로서도 지금까지 부정부패 방지의 추진이 적절했었는가, 부정부패를 일으킬만한 요인은 없었는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서 정부는 부정부패를 바로 잡으며, 문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체제 확립을 도모하면서, 행정 및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목표로 해 아래와 같이 새로운 추진을 실시하고자 한다.

부정부패에 관여한 직원의 신분·퇴직처리등에 대해서는 공무에 대한 국민신뢰확보 요청과 직원개인의 권리존중에 유의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법적조치를 비롯한 제도·운영이라는 면에 걸쳐 검토를 한다.

記

第一 공무원윤리규정의 제정등

각 관청에서는 관계업자들의 접촉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방지, 직무의 올바른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하의 내용을 포함한 訓令(앞으로는 「공무원윤리규정」)을 신속하게 제정하기로 한다.

또한 각 관청에서는 제정한 공무원윤리규정을 공표함과 함께, 그 취지 및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단체등에게 충분히 이해시킨다. 각 관청에서도 해당관청의 공무원윤리규정을 엄수하기 위해 그 후도 정기적으로 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외에도, 연수등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省(廳) 직원윤리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관계업자들과의 접촉에 관해서 ○○省(廳)공직자가 엄수해야 할 사항등을 제정함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나 불신을 초래할만한 행위는 미연에 방지해, 공

무에 대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

2 공직자의 기본적 마음가짐

(1) 국민전체의 봉사자임을 자각

모든 공직자는 국민전체의 봉사자이지, 일부의 봉사자가 아님을 자각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임한다. 공공의 이익증진을 목표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2) 공무의 신용

공직자는 자신의 행동이 공무신용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해 일상행동에 있어서 항상 공사구분을 명확하게 하며, 직무나 그 직위를 사적이익에 이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공직자는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얻어 겸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무의 신용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명심한다.

3 관계업자와의 접촉에 관한 규제

(1) 관계업자의 정의

관계업자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가리킨다.

1 해당직원의 직무에 이해관계에 있는 업자 및 개인
(法人格을 소유하지 않는 자도 포함한다)

2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부하직원이 사실상 영향력을 끼치리라 판단되는 이해관계가 있는 업자 및 개인 (法人格을 소유하는 자도 포함한다)

(2) 관계업자와의 접촉에서 금지사항

직원은 관계업자간에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접대를 받는 것
2 식사(파티를 포함) 하는 것
3 유흥(스포츠), 여행을 하는 것
4 轉任, 해외출장등과 관련해 돈을 받는 것
5 명절을 맞이하여 선물을 받는 것 (널리 배부되는 선전광고용품은 제외한다)

6 강연, 출판물 寄稿와 관련해 보수를 받는 것
7 금전(축의금을 포함) , 수표, 상품권등의 증여를 받는 것
8 본래 자신이 부담해야 할 債務를 부담시키는 것
9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役務를 제공받는 것
10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부동산, 물품등의 대여를 받는 것
11 미공개주식을 양도받는 것
12 지금까지 열거한 것 이외에,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받은 것
(사회일반의 접대로서 인정된 차대접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3) 가족관계등 사생활면에서의 행위처리
(2)규정은 가족관계, 개인적인 교우관계중 직무와 관계없는 것에 기초한 사생활면에 관한 것에는 적용시키지 않는다.

(4) 빙자행위에 관한 처리
(2)에서 규정한 행위에는 <사적인 교제> <사회의 일반적인 예의행위> <학습회> <강연회>등을 빙자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도 포함된다.

(5) (2)의 예외가 되는 경우의 절차
(2)에는 대가를 지불하고 식사를 하는 경우, 또는 직무로서 필요한 회의등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직원은 예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8에서 정한 복무사무관에게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해 양해를 구한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사전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사후에 조속하게 복무사무관에게 보고해야만 한다.
(예외가 되는 경우의 처리에서는 각 관청에서 구체적사례를 수집해 검토를 실시하는 등, 각 관청별로 연구회를 가진다)

4 관계공익법과의 접촉에 대한 準用
공직자가 설립에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관계공인법인의 직원과 접촉할 경우에 대해서는 3의 규정을 準用한다.

5 관공서와의 접촉에 대한 準用
직원이 관공서(나라의 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및 특수법인등의 정부관계기관)의 직원과 접촉하는 경우에 국민의 의혹이나 불신을 초래할 것 같은 일을 방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직

무상의 필요성에 고려하면서 3의 규정을 準用한다.

6 위반에 대한 처리등

(1) 직원이 3,4 또는 5의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직원의 상사는 복무관리관과 연락해 바로 실정조사를 개시함과 함께, 필요에 따라서는 8에서 정한 총괄복무관리관에게 보고한다.

(2) 직원이 3,4 또는 5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그 임명을 받은 자는 총괄복무관리관 또는 복무관리관과 연계해 바로 본인에게 사정설명을 요구하고 실정조사를 실시한다.

(3) 3,4 또는 5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직원으로부터 사직서제출이 있었을 경우에, 해당직원의 징계처분에 있어 일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때에는 사직의 승인을 보류해 총괄관리관 또는 복무관리관과 연계해 필요한 사정조사를 실시한다.

(4) (2)또는 (3)의 조사결과, 직원이 3,4 또는 5의 규정에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그 임명을 받은 자는 총괄복무관리관 또는 복무관리관과 연락을 취해 그 위반정도에 따라. 징계처분(면직, 휴직, 減給 또는 戒告), 훈고,엄중주의,인사관리상 필요한 처분등을 엄중히 강구한다.

< (3) 및 (4)의 징계처분을 적절하게 조치하기 위해 처분사례의 검토등을 실시하는 각 관청은 폭넓은 연구회를 연다>

7 각 관청의 과장이상의 직원에 대한 특별준수 조치

(1) 정기적인 조치

각 관청에서 과장 및 그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반성과 솔선수범을 구하면서, 아울러 상호간의 주의환기를 촉구한다.

(2) 보직이동시 조치

각 관청에서 과장 및 그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의 보직이동시 신규자에게 이 규정내용을 솔선수범해 줄 것을 강조하며, 아울러 상호간의 주의환기를 촉구한다.

8 공무원윤리규정의 실효확보체제

(1) 복무관리직 및 총괄복무관리관 설치

이 규정에 기초해 부정부패를 바로 잡으며,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복무관리관과 총괄복무관리관을 둔다.

복무관리관은(적절하게 조직단위로) 둔다.

총괄복무관리관은 (관방장 또는 여기에 준하는 자)가 담당한다.

(2) 복무관리자의 임무

복무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조직단위)의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추진에 관해서, 직원에게 필요한 조언과 지도를 실시함과 함께, 직원의 상담에 임하는 것

2 직원이 제출한 신고서상황에 대해서 총괄복무관리관에게 보고함과 함께, 필요에 따라 직원의 상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

3 기타(해당조직단위)에서 이 규정의 철저한 엄수를 도모하는 것

(3) 총괄복무관리관의 임무

총괄복무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정부패방지 추진에 관해서 복무관리관과 밀접한 연계를 꾀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복무관리관에게 조언과 지시를 실시하는 것

2 복무관리관의 보고를 정리해 사무차관등에게 보고함과 함께, 필요에 따라서는 적절한 조치등에 대해 사무차관등에게 보고한다.

3 기타 ○○省 (廳) 을 통해 이 규정의 철저한 엄수를 도모하는 것

第二 예산집행사무, 인·허가등에 관한 適正化 조치

각 관청에서 불상사를 근절하기 위해 각 관청의 실정에 맞추어 내부의 사무관리 특히 보조금등의 예산집행사무, 인·허가사무등을 적절하게 실시하면서, 다음 내용에 따라 행정의 쇄신강화를 도모한다.

1 보조금등의 재점검

각 관청에서 지방공공단체등 사업실시주체를 통한 사업실시

무상의 필요성에 고려하면서 3의 규정을 準用한다.

6 위반에 대한 처리등

(1) 직원이 3,4 또는 5의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직원의 상사는 복무관리관과 연락해 바로 실정조사를 개시함과 함께, 필요에 따라서는 8에서 정한 총괄복무관리관에게 보고한다.

(2) 직원이 3,4 또는 5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그 임명을 받은 자는 총괄복무관리관 또는 복무관리관과 연계해 바로 본인에게 사정설명을 요구하고 실정조사를 실시한다.

(3) 3,4 또는 5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직원으로부터 사직서제출이 있었을 경우에, 해당직원의 징계처분에 있어 일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때에는 사직의 승인을 보류해 총괄관리관 또는 복무관리관과 연계해 필요한 사정조사를 실시한다.

(4) (2)또는 (3)의 조사결과, 직원이 3,4 또는 5의 규정에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 또는 그 임명을 받은 자는 총괄복무관리관 또는 복무관리관과 연락을 취해 그 위반정도에 따라. 징계처분(면직, 휴직, 減給 또는 戒告), 훈고,엄중주의,인사관리상 필요한 처분등을 엄중히 강구한다.

< (3) 및 (4)의 징계처분을 적절하게 조치하기 위해 처분사례의 검토등을 실시하는 각 관청은 폭넓은 연구회를 연다>

7 각 관청의 과장이상의 직원에 대한 특별준수 조치

(1) 정기적인 조치

각 관청에서 과장 및 그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반성과 솔선수범을 구하면서, 아울려 상호간의 주의환기를 촉구한다.

(2) 보직이동시 조치

각 관청에서 과장 및 그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의 보직이동시 신규자에게 이 규정내용을 솔선수범해 줄 것을 강조하며, 아울려 상호간의 주의환기를 촉구한다.

8 공무원윤리규정의 실효확보체제

(1) 복무관리직 및 총괄복무관리관 설치

이 규정에 기초해 부정부패를 바로 잡으며,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복무관리관과 총괄복무관리관을 둔다.

복무관리관은(적절하게 조직단위로) 둔다.

총괄복무관리관은 (관방장 또는 여기에 준하는 자)가 담당한다.

(2) 복무관리자의 임무

복무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당조직단위)의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추진에 관해서, 직원에게 필요한 조언과 지도를 실시함과 함께, 직원의 상담에 임하는 것

2 직원이 제출한 신고서상황에 대해서 총괄복무관리관에게 보고함과 함께, 필요에 따라 직원의 상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

3 기타(해당조직단위)에서 이 규정의 철저한 엄수를 도모하는 것

(3) 총괄복무관리관의 임무

총괄복무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부정부패방지 추진에 관해서 복무관리관과 밀접한 연계를 꾀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복무관리관에게 조언과 지시를 실시하는 것

2 복무관리관의 보고를 정리해 사무차관등에게 보고함과 함께, 필요에 따라서는 적절한 조치등에 대해 사무차관등에게 보고한다.

3 기타 ○○省 (廳) 을 통해 이 규정의 철저한 엄수를 도모하는 것

第二 예산집행사무, 인·허가등에 관한 適正化 조치

각 관청에서 불상사를 근절하기 위해 각 관청의 실정에 맞추어 내부의 사무관리 특히 보조금등의 예산집행사무, 인·허가사무등을 적절하게 실시하면서, 다음 내용에 따라 행정의 쇄신강화를 도모한다.

1 보조금등의 재점검

각 관청에서 지방공공단체등 사업실시주체를 통한 사업실시

의 適正性을 꾀하기 위해, 소관하는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 기준 및 선정절차등의 재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각 보조금의 실정에 맞추어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시설에 대해서의 교부결정 현황일람을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이를 위해 보조금適正化중앙연락회등을 통해 정보연락 강화를 꾀한다.

2 감사·조사체제등의 재점검

각 관청에서는 보조금등의 예산집행사무, 인·허가사무등에 관한 종래의 내부감사·조사의 체제·감사·조사의 실시상황 등을 신속하게 재점검, 그 실효성을 확보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공표한다.

또한 각 관청은 최근 공무원의 부정을 감안해 국민의 의혹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한다. 부정부패의 발생방지 관점에서 년도계획을 작성하는 등, 감사·조사를 실시한다.

3 행정감찰기능의 활용

각 관청에서 택해진 이런 조치 및 上記사무등에 관한 감사·조사의 실시상황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행정감찰기능을 활용한다.